

순환자원 품질인증 [] 신청서
[] 연장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30일	
신청인	상 호			사업자등록번호		
	대 표 자 성명			대 표 자 생년월일		
	주 소	본 사			(전화번호:)	
		사 업 장				
					(전화번호:)	
담당자	성 명		직 위	전화번호		
순환자원 현 황	순환자원의 종류			순환자원의 사용용도		
	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순환 자원 해당 여부: []해당, []해당 없음					
	순환자원의 인정 유효기간 (해당하는 경우):					
품질인증 신 청	이물질 함유량			유해물질 함유량		
품질인증 연장신청	중전 품질인증번호			중전 인증유효기간		
	이물질 함유량			유해물질 함유량		

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2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
[] 품질인증
[] 품질인증 연장 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인증기관의 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순환자원 인정서 사본 또는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순환자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.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을 증명할 수 있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(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」 제19조제1 호 및 제2호에 따른 이물질·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적용받는 순환자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순환자원의 품질유지 관리 계획서 4. 순환자원의 사용 계획서	수수료 (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)
-------------	--	--

